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에 반영
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택배원”을 “택배원 및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를 “세분류”로, “방문점검원”을 “방문 점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차주”를 “화물차주 또는 그 화물차주와의 계약 등에 따라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	-----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	-----
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3.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	-----
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u>세</u>	----- <u>세분</u>
<u>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u>	<u>류에 따른 학습 · 교구 관련 -</u>
<u>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u>	-----
<u>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u>	-----
<u>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u>	-----
<u>치는 사람</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5. -----
류에 따른 <u>택배원</u> 으로서 다음	----- <u>택배원 및 세세분류</u>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에 따른 그 외 배달원</u> -----
는 사람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6. -----
류에 따른 <u>택배원</u> 으로서 <u>퀵서</u>	----- <u>늘찬배달원</u> -----
<u>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u>	-----

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 10. (생략)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u>세세분류</u>에 따른 대여 제품 <u>방문점검원</u> 12. · 13. (생략)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u>화물차주</u>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15. ~ 18. (생략)	----- -----. ----- --. 7. ~ 10. (현행과 같음) 11. ----- <u>세분류</u>----- <u>방문점검원</u> 12. · 13. (현행과 같음) 14. ----- ----- <u>화물차주</u> <u>또는 그 화물차주와의 계약</u> <u>등에 따라 화물을 직접 운송</u> <u>하는 자</u>----- -----. -----. 가. · 나. (현행과 같음) 15. ~ 1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